

고성군 화장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73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2. 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 3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2. 11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가에 상응하는 화장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“별표” 화장장사용료징수기준보완(안 제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용어를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고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50%나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데 대하여 우리 지역 실정과 인상폭에 대하여 적당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화장장 사용료 인상기준은

● 답 : 도내 여타 시군의 자료를 받아 균형을 맞추어 기준을 잡아 조정 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